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1-07

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

제 3 5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	2014가합525313 부당이득금
원 고	[redacted]
피 고	[redacted]도
변 론 종 결	2014. 7. 4.
판 결 선 고	2014. 8. 2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29,728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. 2. 7.부터 2014. 8. 22.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2014. 4. 15.부터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1-07

이 유

1. 기초사실 및 관계법령

가. 이 사건 담보신탁 및 공매

(1) 주식회사 [redacted]디(이하 [redacted]디라 한다)는 2006. 9. 28. [redacted]시 [redacted]구 [redacted]동 산 [redacted] 임야 9,827㎡, 산 [redacted] 임야 14,510㎡(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)에 관하여 주식회사 [redacted]신탁(이하 [redacted]신탁이라 한다)과 사이에 부동산 담보신탁계약(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)을 체결함과 아울러 그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.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[redacted]디가 위탁자 겸 채무자, 생보신탁이 수탁자, 주식회사 [redacted]은행(이하 [redacted]은행이라 한다)이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([redacted]디에 대한 채권자)로 되어 있었다.

(2) [redacted]은행은 공매절차를 통해 2009. 2. 5. 생보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91억 4,4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, 매매대금 중 10,359,185,360원은 [redacted]디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과 상계하고, 나머지 8,784,814,640원을 그 무렵 생보신탁에 지급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등록세의 신고, 납부

(1)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적용되던 구 지방세법(2009. 1. 1. 법률 제9302호) 제133조에 의하면,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 취득 등기에 관하여 부동산 가액의 1,000분의 10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(통상의 부동산 등록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,000분의 20), 같은 법 제260조의 3 제1항에 의하면, 부동산 등록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1-07

(2) [redacted]은행은 위와 같이 우선수익자로서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수탁자로부터 취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, 2009. 2. 6. 대리인을 통해 [redacted]지사의 위임을 받은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등록세 등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인 191억 4,400만 원의 1,000분의 20에 해당하는 3억 8,288만 원을 등록세로,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76,576,000원을 지방교육세로 신고납부(이하 이 사건 신고납부라고 한다)하였다.

다. 파산 등

[redacted]은행은 2013. 4. 3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1~3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, 을1~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당연무효인지 여부

(1) 등록세 등과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하고,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, 의미,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
(2) 한편 조세의 신고납부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1-07

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,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.

(3) 우선수익자의 신탁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세율(부동산 가액의 1,000분의 10)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, [redacted]은행의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(부동산 가액의 1,000분의 20)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고, ① 이 사건 부동산이 신탁재산인 사실 및 원고가 우선수익자라는 사실은 등기부 내지 신탁원부에 의해 공시되어 있는 점,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법률관계는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사이의 단순한 금전급부관계로서 실질적으로 민사상의 금전급부관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일반적으로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이외의 제3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, 이 사건 신고납부도 마찬가지로서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점, ③ 조세법률관계의 경우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은 체납처분이라는 자력집행력에 의해 국가재정을 확보할 수 있고, 납세의무자는 법률상의 구제절차 등을 통해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처분의 유·무효를 조기에 확정시켜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,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의 하자도 명백하여 이 사건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봄이 상당하다.

나. 소멸시효 완성 여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1-07

(1) [redacted]은행이 2009. 2. 6. 이 사건 신고납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구 지방세법 제30조의 5 제2항에 의하면,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, 원고는 이 사건 신고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4. 4. 14.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.

(2) 그러나,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원고는 이 사건 신고납부일인 2009. 2. 6.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. 1. 2.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에게 이 사건 등록세 등의 환급을 요청하여 이를 최고한 사실이 인정되고, 원고는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, 2014. 1. 2.경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(민법 제174조).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없다.

(3)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세 등의 귀속주체인 피고에 대하여 환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에게 환급청구를 하였으므로,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는 최고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,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,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피고의 대표자인 [redacted]지사로부터 이 사건 등록세 등의 징수업무를 위임받아 징수업무를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에게 한 최고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친다 할 것이다.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다. 피고가 반환할 금액

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금액은 [redacted]은행이 납부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액 459,456,000원에서 정당한 세액인 229,728,000원(이 사건 토지의 가액 191억 4,400만 원 × 0.01 + 191억 4,400만 원 × 0.01 × 0.2)을 공제한 나머지 229,728,000원이 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1-07

3. 결론

그렇다면, 피고는 원고에게 229,728,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날인 2009. 2. 7.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. 8. 22.까지 민법에서 정하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[redacted]성[redacted]

판사 [redacted]연[redacted]

판사 [redacted]경[redacted]